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9 선고 2017나34546(본소), 2017나34553(반소) 판결 [건물철거
및 토지인도 등 · 소유권이전등기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1. 29 선고 2017나34546(본소), 2017나34553(반소)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6 선고 2016가단5184240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A 아파트 재건축조합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7. 10. 30.

판결 선고 2017. 11. 29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가단5184240(본소),
2017가단5055004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들은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, 서울 동작구 D 대 42,478m² 중 별지 도면 표시 79, 80, 81, 82,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지상 창고 21m² 및 같은 도면 표시 83, 84, 85, 86,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지상 2층 베란다 3m'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75, 76, 77, 78, 45, 46,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ㄴ' 부분 대지 23m²(이하 '이 사건 점유부분'이라 한다)를 인도하며, 2016. 4. 2.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 완료시까지 월 20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

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하여 2016. 4. 1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항소취지]

1. 본소

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.

2. 반소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미리

판사조운정

판사하세용

별지